규칙 신·구 대비표

조 항	신	구	비 고
제 6 조 【휴업일】	1. 본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며, 개원기념일(7월3일),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·겨울 및 학년말의 방학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단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2.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3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. 4.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은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.	본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국경일 2. 공휴일 3. 개원기념일(7월3일) 4. 여름·겨울 및 학년말의 방학 단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5. 제 1호 내지 제4호 외에 비상재해,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	